2019 도로교통법규 기본서 정오표(19.1.14)

최근 출간된 2019 도로교통법규 기본서에 편집상의 오류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정오표를 만들어 배포합니다. 저희 잘못으로 공부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오류가 발생하지 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오(誤)	정(正)
p.8	**16줄** 03 **신호기 및 표지**(법 제3조 및 제4조)	**16줄** 03 **신호기등의 설치 및 관리,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 · 관리기준등**(법 제3조 및 제4조)
p.38	**20줄** ㉡ 법 제2조 … 도로로서 가목에 …	**20줄** ㉡ 법 제2조 … 도로로서 ㉠에 …
p.49	**4줄** 자전거로도로	**4줄** 자전거도로
p.50	**밑에서 5줄** 2.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시행규칙 제15조)	**밑에서 5줄** 2.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시행규칙 제16조)
p.65	**밑에서 8줄** 2. 차마의 운전자의 통행	**밑에서 8줄** 2.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의 통행
P.69	**19줄** ⓐ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	**19줄** ⓐ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
p.74	**8~9줄** ㉠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40대 ㉡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지역: 20대	**8~9줄** ㉠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30대 ㉡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지역: 15대
	18줄 대행법인 등은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	**18줄** 대행법인 등은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
	37줄 **차의 등화(법 제37조)**	**37줄**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법 제37조)**
p.75	**밑에서 11줄~10줄 내용을 아래 내용으로 교체함(밑줄 부분이 개정사항임)**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19.3.28.〉	
p.109	**문제 59 ① 지문** ①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한다.	**문제 59 ① 지문** ①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table>
<tr><td></td><td colspan="2">문제 59 해설을 아래 내용으로 교체함.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법 제29조)
①, ②, ③ 생략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④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td></tr>
<tr><td>p.119</td><td>13줄 14줄
② 자전거나 경운기등에 대하여는 …
③ 그러나 500cc미만의 원동기를 …</td><td>13줄 전체 삭제
14줄 전체 삭제</td></tr>
<tr><td>p.121</td><td colspan="2">밑에서 5줄~3줄 내용을 아래 내용으로 교체함(밑줄 부분이 개정사항임)
(2)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19.3.28.〉</td></tr>
<tr><td>p.122</td><td>1줄
안전운전의 의무(법 제48조)</td><td>1줄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법 제48조)</td></tr>
<tr><td>p.168</td><td>5줄
①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td><td>5줄
①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을 받은 사람</td></tr>
<tr><td rowspan="2">p.186</td><td>10줄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긴급자동차</td><td>10줄 - 긴급자동차 삭제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td></tr>
<tr><td>19줄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td><td>19줄 - 삭제</td></tr>
<tr><td>p.198</td><td>19줄
도로교통공단은 (1)㉡ 및 (2)에 따라 …</td><td>19줄
도로교통공단은 (1)③ 및 (2)에 따라 …</td></tr>
<tr><td>p.250</td><td>문제 12 ③ 지문과 해설 중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하면 …</td><td>문제 12 ③ 지문과 해설 중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이수하면 …</td></tr>
<tr><td>p.268</td><td>밑에서 7줄
03 국고 보조(법 제138조의2)</td><td>밑에서 7줄
03 비용의 지원(법 제138조의2)</td></tr>
<tr><td rowspan="3">p.269</td><td colspan="2">14줄 “㉤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을 삭제하고 차례를 순서대로(㉤, ㉥, ㉦) 수정함.</td></tr>
<tr><td colspan="2">19줄 “㉦ 제108조에 따라 기능검정을 신청하는 사람”을 삭제함.</td></tr>
<tr><td colspan="2">7줄 밑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table>
<tr><th>범칙행위</th><th>근거법조문
(도로교통법)</th><th>차량 종류별
범칙금액</th></tr>
<tr><td>12의2. 법 제73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td><td>제160조 제2항
제6호</td><td>8만원</td></tr>
</table></td></tr>
</table>

p.306

8줄 밑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범칙행위	근거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12의3. 긴급한 용도나 그 밖에 허용된 사항 외에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	제29조 제6항	

밑에서 4줄 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범칙행위	근거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31의2.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주차방법 위반	제34조의3	

p.307

마지막 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62.에 마지막 내용이 삭제됨)

은 제외)

p.308

1~2줄	**1~2줄(밑줄 부분 삭제)**
62의2.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승차 거부은 제외한다)	62의2.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승차 거부

p.308

6줄 밑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범칙행위	근거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64의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 운전	제44조 제1항	자전거: 3만원
64의3.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	제44조 제2항	자전거: 10만원

p.326

밑에서 6줄	밑에서 6줄
… 동죄를 범한 때, 즉 중요법규 11개	… 동죄를 범한 때, 즉 중요법규 12개

부록 p.13

법 34조의2 내용 중 2줄, 5줄(2곳)	**법 34조의2 내용 중 2줄, 5줄(2곳)**
제32조 제6호 또는 제33조 제4호	제32조 제7호 또는 제33조 제3호

▸ p.189 4줄 이하 운전할 수 있는 범위 내용으로 아래 내용으로 변경함(긴급자동차 내용을 삭제함).

구 분	승용 및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위험물운반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구난차등 제외)
제2종 보통면허	10명 이하	4톤 이하	×(무면허)	3.5톤 이하
제1종 보통면허	15명 이하	12톤 미만	3톤 이하, 3,000ℓ 이하	10톤 미만
제1종 대형면허	모든 자동차(구난차등, 이륜자동차는 제외)			

▸ 부록 p.13 제32조, 제33조를 아래 내용으로 교체함(진한 부분이 개정사항임)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

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p.51~52, p.146~147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시행규칙 별표9)"를 아래 내용으로 변경함.

도로		차로 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고속도로외의 도로		왼쪽 차로	•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고속도로	편도 2차로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2차로	• 모든 자동차
	편도 3차로 이상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왼쪽 차로	•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 비고

1.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왼쪽 차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로를 말한다.
      1)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차로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2)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 그 중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나. "오른쪽 차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로를 말한다.

1)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2)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2. 모든 차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4.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5. 이 표 중 승합자동차의 차종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6. 다음 각 목의 차마는 도로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가. 자전거

나. 우마

다. 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

라. 다음의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른 화약류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4)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7)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

8)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9) 「농약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원제

마. 그 밖에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행되는 것

7.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 내에서 위 표 중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의 차로 구분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